

“구민의 날”로 지정하여,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 문화 축제를 통해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무시켜 마포구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마포구민의 날을 지정 : 10월 23일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(전문위원 김진재)

-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복잡한 도시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내 고장의 정을 일깨우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마포구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.
-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향토문화 계승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간다면 구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, 자치구 위상확립을 위해서도 뜻깊은 날로 기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문(이강필 위원): 좋은일이다. 마포의 역사성과 고향의일이 담겨있는 전통문화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?
- 답변(이은규 문화공보실장): 이번 지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. 현재로는 나룻배진수놀이, 구민노래자랑, 체육대회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타사항: 없 음

마포구민의날지정(안)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4. 3. 9
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○ 제안이유

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의 하루를 “구민의 날”로 지정, 구민의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 문화축제 통해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무시켜 마포구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음.

○ 주요골자

마포구민의 날을 지정 : 10월 23일

○ 참고사항

- 법령상 적합성

- 마포구는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치되었음.

- 시기의 적정성

- 10월은 문화의달인 동시에 10월 20일은 “문화의 날”이며 10월 23일 무렵은 각종 문화축제 행사에 시기적으로 적합함.

- 마포구 설치당시 관할동: 23개정(총독부령 제350호)

- 아현정(阿峴町), 공덕정(孔德町), 신공덕정(新孔德町), 도화정(桃花町), 마포정(麻浦町), 토정정(土亭町), 용강정(龍江町), 염리정(鹽里町), 대흥정(大興町), 신수정(新水町), 구수정(舊水町), 현석정(玄石町), 신정정(新井町), 하중정(賀中町), 창전정(倉前町), 동교정(東橋町), 서교정(西橋町), 상수일정(上水溢町), 하수일정(下水溢町), 당인정(唐

人町), 합정정(合井町), 망원정(望遠町),
율도정(栗島町)

마포구민의 날 지정(안)

마포구민의 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마포구민의 날 : 10월 23일

'94.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심사보고서

1994. 4. 12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4. 9. 마

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4. 4. 9.

다. 상정일자 : 제2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('94. 4. 12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 영찬)

가. 제출이유

·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4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매각 —— 24필지

소 재 지	지목	지적(㎡)	매각시기	매 각
공덕동 80-14	대	24	상 반 기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7호
공덕동 175-248	"	7	"	"
아현동 603-71	"	6.6	"	"
염리동 21-87	"	7	"	"
염리동 41-215	"	3	"	"
염리동 41-216	"	3	"	"
염리동 41-217	"	7	"	"
성산동 572-771	"	25	"	"
" 572-368	"	18	"	"
연남동 47-154	"	47	"	"
공덕동 111-181	"	10	"	"
동교동 180-1	"	96.5	"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제1항
대흥동 670	대	169	"	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0호 (대흥재개발 사업구역)
창전동 12-1외 10필지	대, 도로	842.1	"	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0호 (창전재개발 사업구역)

2) 취득 —— 2필지

소 재 지	지목	지적(㎡)	매각시기	취 득 목 적
서교동 452-14	대 전물	264.6 194.36	상 반 기	서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매입
서교동 339-4	대 전물	250.6 107.27	"	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매입